

#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시행내규

제정 2015. 12. 31.

개정 2016. 1. 13.

개정 2021. 11. 8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임금피크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, 보수, 복지, 직무 및 정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.

## 제2장 임금피크제의 적용

**제3조(적용대상)** 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공단 정원 내 (일반직, 기능직, 무기계약직) 모든 직원으로 한다.

②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50% 이하인 직원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.

**제4조(임금피크제의 유형)** 공단에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으로 한다.

**제5조(적용시기)** ① 임금피크제의 적용 기간은 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정년퇴직일 기준 3년 이전으로 한다.

②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년 퇴직일이 6월 30일인 경우 : 퇴직일 3년 전 7월 1일부터 적용
2. 정년 퇴직일이 12월 31일인 경우 : 퇴직일 3년 전 1월 1일부터 적용

**제6조(임금의 조정)**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지급 임금은 피크임금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임금 지급률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적용 1년차 : 피크임금 × 10% 감액
2. 적용 2년차 : 피크임금 × 15% 감액
3. 적용 3년차 : 피크임금 × 20% 감액

② 임금 계산 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조정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**제7조(신규채용)** ①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연도별 신규채용인원은 정년 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인원분포, 신규채용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간 임금격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경우에 한해 신규채용 규모 조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 안성시 및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
## 제3장 퇴직급여금

**제8조(퇴직급여금)**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제도 시행 전에 퇴직급여 확정 급여형(DB)을 확정기여형(DC)으로 변경하도록 한다.

## 제4장 인사관리

**제9조(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군 및 직급 관리)**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[별표1]과 같이 편성하고 제도 시행 이전 직무는 유지할 수 있으나 직급은 제외한다.<개정 2016.1.13.>

② 공단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별도직무 개발에 노력한다.

**제10조(평정)**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무평정을 시행하며, 평가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별도직군 대상자간 실시한다.

## 제5장 복리후생

**제11조(복리후생)** ①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.

②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희망 시 퇴직 3개월 전 사회적응 퇴직프로그램을 유급으로 실시한다.

## 제6장 보칙

**제12조(절감예산의 활용)**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예산은 신규채용 인건비로 이용하고 잔여예산은 이월한다.

**제13조(재설계)** 이사장은 직원의 임금수준 및 격차를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3년마다 재설계할 수 있다.

**제14조(제도의 보완)**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의 변경 또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내규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.

부 칙<2015. 12. 31.>

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6. 1. 13.>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 11. 8.>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<개정 2021. 11. 8.>

### 임금피크제 대상자 정원표

(단위 : 명)

직급별	직렬별	인원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총		11	0	3	1	2	4	1
일반직		0	0	0	0	0	0	0
3급	행정	0						
4급	행정	0						
5급	행정	0						
6급	행정	0						
7급	행정	0						
기능직		11	0	3	1	2	4	1
1급	시설	1		1				
	운전	4				1	3	
2급	시설	0						
	운전	3		1	1			1
3급	시설	0						
	운전	3		1		1	1	
4급	시설	0						
	운전	0						
5급	시설	0						
	운전	0						
공무직		0	0	0	0	0	0	0
환경미화원		0						
사무보조원		0						
시설관리원		0						